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0. 14 선고 2021가단10456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9. 9.

판 결 선 고 2021. 10. 14.

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에게 17,307,610원 및 그 중 3,714,719원에 대하여 2021. 1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각 1/3 지분에 관 부동산 중하여,
가. 피고들 사이에 2016. 8. 23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 C은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및 '변경된 청구원인' 각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나. 피고 C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손인희

별지